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21년 2월 24일

거창군 훈령 제447호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법무행정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큰 사건 또는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수입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거창군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2. 거창군을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별표의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신 설〉</p>	<p><u>제9조(소송대리인 선임) ①</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큰 사건 또는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법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p>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는 수입료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그 밖의 소송비용을 심급별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표의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창군의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 2. 거창군을 관할하는 법원을 벗어난 지역 관할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으로서 별표의 착수금으로는 소송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u>제9조</u>(생략)</p>	<p><u>제10조</u>(현행 제9조와 같음)</p>

[별표 4]

소 송 비 용 지 급 기 준

구분 소송별	내 용	지 급 기 준	
		착 수 금	승소사례금
민사소송 행정소송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30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없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가. 2천만원 이하 나.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라.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마.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바. 5억원 초과	1,500,000원 이내 2,000,000원 이내 3,000,000원 이내 3,500,000원 이내 4,000,000원 이내 400만원+(소송물가액-5억원) ×0.5÷100 = 환산금액 이내	승소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3. 중요사건	10,000,000원 이내	
	4. 상고심 및 환송심 가. 본안심리	1심 본안사건에 준함 (다만, 동일 변호사 선임 시 본안사건의 1/2 이내)	
	5. 그 밖의 비용	실비 실비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중 3급 공무원 해당액 실비	

※ 착수금, 승소사례금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10% 추가지급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2. 24.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북로 246-26
- 변경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7길 49-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고시 조서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31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가북로 246-26	20210224	20091228	가북으로 가는길로 불려진 것에서 유래	부여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59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계수나무길 703-69	20210224	20090401	달속의 계수나무 모양이라 이름지어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부여
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7길 5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7길 49-4	20210224	20090401	관청의 비용을 위한 땅이었다고 하는 옛지명을 반영한 일곱번째 도로	변경
4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1271-5	경상남도 거창군 남하면 무릉4길 131-5	20210224	20090401	마을내에 무릉도원이 있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네번째 도로	부여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806-4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7길 23-9	20210224	20090401	상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일곱번째 도로	부여
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788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2길 44-46	20210224	20090401	북쪽 임방에 새벽에 스님이 부처에게 예를 드리는 명당터가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두번째 도로	부여
7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56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창마1길 168-49	20210224	20090401	고려 때부터 가소현 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부여
8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9-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4길 67	20210224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부여
9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112-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5길 21	20210224	20160420	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	부여

가조면 중마2구(소로2-29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47-6번지 일원에 “가조면 중마2구(소로2-29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 제21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의 열람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보상조서의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 이의 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2.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가조면 중마2구(소로2-29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시계획도로 L=395m, B=8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토지 및 물건 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토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47-6번지 등 25필지
- 다. 출입기간 : 2021. 3. 2. ~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247-6번지 등 25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장물건 확인 및 누락 여부 등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도시개발담당) 및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1. 3. 2.(화) ~ 2021. 4. 2.(수)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도시개발담당

【☎055-940-3595, fax)055-940-3579】

다. 이의신청 및 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계획 안내문에 첨부된 이의신청서에 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내 서면 또는 팩스전송, 우편으로 제출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통보(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 보상금산정 → 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 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 시) 공탁

7. 감정평가업자 선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가 되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붙임 : 의견서 >

『 가조면 중마2구(소로2-29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 . .</p> <p><input type="checkbox"/> 의견 제출인</p> <p>- 주 소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 지 조 서 (1)

번호	소재지	지번	공부상		편입		소유자	
			지목	면적	지목	면적	주소	성명
1	가조면 마상리	247-6	대	704	대	217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29	가조단위농업 협동조합
2	"	861-2	도	8,347	도	225		국(국토교통부)
3	"	233-1	답	305	답	60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45-37	윤*근
4	"	699-9	구	6,809	구	65		국(농림축산식품 부)
5	"	234	대	463	대	57	경남 양산시 물금읍 오봉로 185, 102동 308호	신*라
6	"	235-5	답	99	답	77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76	최*기
7	"	236-1	답	4,190	답	407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1222	오석인 외1인
8	"	236-2	도	340	도	28		국(농수산부)
9	"	235-6	답	40	답	13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76	최*기
10	"	97-1	대	145	대	145		거창군
11	"	98	대	344	대	21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98	이*봉
12	"	861-5	도	215	도	18		국(국토교통부)
13	"	102	대	294	대	9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115,102동 802호	이*열
14	"	103	대	103	대	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로 59, 104동 1402호	백*열
15	"	103-2	대	120	대	120		거창군
16	"	105-4	도	904	도	72		거창군
17	"	106-3	대	160	대	116		거창군
18	"	114	대	407	대	24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16	신*해
19	"	116	대	821	대	127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16	신*해
20	"	115-2	대	13	대	8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16	신*해
21	"	115-1	대	423	대	99	대구 수성구 만촌동 673-27	신*
22	"	118	대	393	대	16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5길 42	유*명
23	"	118-1	대	275	대	198		거창군
24	"	129	대	155	대	26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29	신*범
25	"	128-1	대	139	대	112		거창군
26	"	127	대	174	대	10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27	이*천
합 계				26,382		2,276		

보 상 계 획 열 램 공 고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에 계획된 「대평리 우회도로(중로1-54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 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4.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대평리 우회도로(중로1-54호선) 개설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190.0m, B=20.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 토지출입내용

- 가. 출입사유 : 토지 및 물건 조사, 측량, 감정평가 등
- 나. 출입토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 다. 출입기간 : 2021. 3. 9. ~ 사업 종료 시까지

3.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도시개발담당) 및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함.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 - 3592, 3596)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에 의거 3인 이상(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평가를 의뢰한 후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여 거창군과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후 보상금 지급

【단, 동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산정 → 보상협의 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 수용재결 → (협의불성립시) 공탁

7. 기타사항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8.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1	대평리	946-2	답	1,372		거창군	
2	대평리	993-4	답	600		배*주	
3	대평리	598-1	도	47		국(농림수산부)	
4	대평리	684-4	답	25		거창군	
5	대평리	679	답	337		거창군	
6	대평리	680	답	202		거창군	
7	대평리	677-2	답	579		거창군	
8	대평리	677-3	답	496		김*호	
9	대평리	676-1	답	513		거창군	
10	대평리	675-1	답	441		거창군	
11	대평리	10-2	구	379		국(농림수산부)	
12	대평리	674-1	답	490		거창군	
13	대평리	673-1	답	513		거창군	
14	대평리	672-4	답	501		거창군	
15	대평리	672-3	답	507		김*애외 3명	
16	대평리	660-2	답	526		거창군	
17	대평리	671-1	답	12		거창군	
18	대평리	595-1	도	121		국(농림수산부)	
19	대평리	660-4	답	167		거창군	
20	대평리	660-5	답	707		거창군	
21	대평리	659-1	답	480		김*애외 3명	
22	대평리	658-1	답	498		김*애외 3명	
23	대평리	657-1	답	505		김*애외 3명	
24	대평리	656-1	답	840		거창군	
25	대평리	655-1	답	349		거창군	
26	대평리	654-1	답	825		거창군	
27	대평리	653-1	답	534		거창군	
28	대평리	652-1	답	243		거창군	
29	대평리	651-1	답	735		거창군	
30	대평리	650-1	답	696		이*순	
31	대평리	649-3	답	682		거창군	
32	대평리	431-10	답	502		거창군	
33	대평리	431-9	답	473		거창군	
34	대평리	431-8	답	410		거창군	
35	대평리	1468-5	도	125		국(국토교통부)	
36	대평리	428-5	답	490		거창군	
37	대평리	427-4	답	497		거창군	
38	대평리	426-1	답	966		이*순	
39	대평리	425-1	답	322		거창군	
40	대평리	1468-6	도	42		국(국토교통부)	
41	대평리	410-1	답	4		거창군	
42	대평리	406-1	답	2,120		거창군	
43	대평리	1468-2	도	23		국(국토교통부)	
44	대평리	7-18	도	134		국(농림수산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45	대평리	394-3	답	80		거창군	
46	대평리	392-1	답	1,041		거창군	
47	대평리	392-2	답	15		거창군	
48	대평리	1512	도	503		거창군	
49	대평리	1452-71	구	7		국(농수산부)	
50	대평리	432-9	답	509		거창군	
51	대평리	432-10	답	108		거창군	
52	대평리	432-1	답	189		거창군	
53	대평리	434-9	답	187		거창군	
54	대평리	434-10	답	29		거창군	
55	대평리	434-1	천	34		국(농수산부)	
56	대평리	434-5	천	53		국(농림축산식품부)	
57	대평리	441-132	임	17		거창군	
58	대평리	441-131	임	19		거창군	
59	대평리	441-157	대	234		거창군	
60	대평리	441-154	대	179		거창군	
61	대평리	441-156	잡	337		거창군	
62	대평리	441-158	임	22		거창군	
63	대평리	441-159	잡	9		거창군	
64	대평리	441-160	대	32		거창군	
65	대평리	441-161	임	4		거창군	
66	대평리	441-153	잡	113		거창군	
67	대평리	441-118	전	154		거창군	
68	대평리	1452-74	창	389		국(기획재정부)	
69	대평리	1452-75	잡	95		국(기획재정부)	
70	대평리	440-70	전	658		거창군	
71	대평리	440 -71	전	1,826		거창군	

<붙임 : 의견서 >

『대평리 우회도로(중로1-54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공고에 따른 의견서

1.제 목		
2.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성 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1. . . .</p> <p>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거 창 군 수 귀하</p>		
비 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1. 6. 9.시행)으로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군수와 체육회장 등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여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신설(안 제9조)

- 1) 위원장 군수 포함 10명 이하로 구성
- 2) 당연 위원: 군 소속 문화 또는 체육관련 국장급,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거창군 체육회장

3) 위촉 위원: 체육단체 또는 유관단체의 장,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해촉, 운영세칙(안 제10조~제13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6. 입법예고기간 : 2021. 2. 18. ~ 2021. 3. 10. / 20일간

7.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1. 3. 10.(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체육시설사업소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우) 50132

○ 전화 : 055)940-8721, FAX: 055)940-872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1부.

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우리군”을 “거창군”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 4호 중 “군내”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 위원은 군 소속 문화 또는 체육관련 국장급,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거창군 체육회장이 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체육단체 또는 유관단체의 장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u>우리군</u>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3. (생략)</p> <p>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u>군내</u>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p> <p>5.~6. (생략)</p> <p>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생략)</p> <p>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p> <p>2.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p> <p>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u>군수</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 ~ 제8조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u>거창군</u>의 체육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과 같다</u>.</p> <p>1.~3. (현행과 같음)</p> <p>4.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u>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p> <p>5.~6. (현행과 같음)</p> <p>제3조(전문체육의 육성) ① (생략)</p> <p>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p> <p>2.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p> <p>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u>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4조 ~ 제8조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p>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 위원은 군 소속 문화 또는 체육관련 국장급,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또는 관련업무 과장), 거창군 체육회장이 된다.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체육단체 또는 유관단체의 장

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출하여 회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해당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단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관계법령

□ 「체육진흥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00호, 2020. 6. 9, 일부개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8.>

②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시행일 : 2021. 6. 9.] 제5조